



안전점검·검사는 안전작업의 필수

정진우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장

작업장의 기계·설비에 대한 정비 불량, 점검 미실시 등으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는 “바빠서”, “설마 사고가 나겠어”, “확인방법을 몰라서” 등을 핑계로 안전점검·검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명존중, 귀중한 노동력 확보’라는 명제가 생산보다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이 안전점검·검사의 태만이다.

안전점검·검사는 작업장에 존재하는 기계·설비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작동·정지상태를 관찰하여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재해위험을 예지하고 불안전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질병의 사전 증상으로 열이나 기침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계·설비에도 사고의 전조(前兆)로서 오일 누출, 온도 상승 등이 발생하는데, 이 징후를 조기에 일찌감치 감지하는 것이 바로 안전점검·검사

이다. 즉, 기계·설비의 점검·검사가 올바르고 확실하게 실시되면 재해요인의 하나인 불안전상태가 없어져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안전점검·검사가 재해예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기업의 자율적 판단으로 실시되는 점검·검사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칙으로 안전점검·검사규정을 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규정에는 점검·검사의 목적, 종류, 실시 방법, 중요사항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안전점검·검사가 실효성 있게 실시되려면, 먼저 점검·검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점검·검사를 실시한 후, 실시 결과를 토대로 수리, 조정,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의 작업·사용 전 점검 등은 기계·설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현장의 작업자가 실시하고, 월별·연간 등의 단위로 실시되는 정기검사는 사내의 숙련자·자격자가 실시하거나 사외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기계·설비의 소유자인 한, 점검·검사의 실시 및 실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안전점검·검사는 기업 전체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안전점검·검사는 기계·설비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다.

점검·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기업 전체가 안전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점검·검사야말로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어찌 보면 상식적인 말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이유이다.